

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의 []변경허가신청서, []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0일	
신청인 (신고인)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의 경우 국적)			
	업소명	허가번호			
소재지	본 사	전화번호			
	제 조 소	전화번호			
변경사항					
구분	변경 전		변경 후		비고
제 조 대 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		[] 농림축산용 [] 양봉용·양잠용·애완용(관상어 제외) [] 농수산물 검용 [] 수산물(관상어 포함) 전용		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(제조시설)의 변경의 허가를 신청(변경을 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		수수료 20,000원							
처 리 절 차										
신청(신고)서 작성 신청(신고)인	→	접 수 농림축산검역본부 ·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(민원실)	→	해당과 이송 농림축산검역본 부·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	→	검 토(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) 농림축산검역본 부·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	→	결 재 농림축산검역본 부·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	→	허가(신고)증 작성 농림축산검역본부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(교부)